

고양시 공고 제2025-2574호

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변경)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

우리시 덕양구 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(경미한변경)인가와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(경미한변경)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11. 14.

고 양 시 장

1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기간 : 2025. 11. 14. ~ 2025. 11. 28. (14일간)
2. 공람장소
 -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(☎031-8075-3438)
 - 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[성사동 704-4, 311호] (☎010-5251-8064)
3. 공람내용 : 조합설립(경미한변경)인가 관계서류
4. 조합설립(경미한변경)인가 신청내용
 - 가. 사업의 종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
 - 나. 사업의 명칭 : 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 - 다. 위 치 : 주교동 618번지 외 25필지
 - 라. 면 적 : 5,628.7㎡
 - 마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: 미정
 - 바. 조합의 명칭 : 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 - 사. 사무소 소재지 :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87(성사동 704-4번지) 311호
 - 아. 조합설립(경미한변경)인가 변경 내용
 - 1) 정관의 변경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제24조(대의원회의 설치) ②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1/10이상 15인 이내로 한다.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의 20%범위 내에서 예비대의원을 선출하여 순차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.	제24조(대의원회의 설치) ②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1/10이상 16인 <u>이내</u> 로 한다.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의 20%범위 내에서 예비대의원을 선출하여 순차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.	

2) 소유권 변경에 따른 조합원 변경

매매	증여	상속	기타	계
1	1			2

3) 조합설립 동의자 추가

5. 의견제출 방법 :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방문 · 이메일 · 우편 · 팩스 접수

- 우편주소 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0(백석별관, 6층), 도시정비과

- 이메일 : jyun2021@korea.kr

- 문의전화 및 팩스 : ☎031-8075-3438 (Fax : 031-8075-4936)

6. 기타사항 : 본 공람내용은 최종 결정내용이 아니며,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,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

의견서

고양시 공고 제2025-2574호(2025. 11. 14.)

(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변경)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)

- 주 소 :
- 성 명 :
- 연 락 처 :
- 제출일자 : 2025. . .
- 제출의견